

대관 규정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대관 규정

(전부개정) 2022. 12. 22.

(개정) 2023. 12. 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의 범위) ① 재단은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꿈나무극장, 오류아트홀, 신도림오페라하우스,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및 해당시설 기타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옥내 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의 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이라 한다)는 “시설별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계획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경우, 심사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대관시설별 대관신청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제2조제1호 시설 중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꿈나무극장, 오류아트홀의 경우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 5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 · 기피 · 회피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대관자인 경우
 2. 대관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정기대관은 대관자가 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심의방법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 예술성, 타당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 건별 승인가 부제로 과반수 이상 최종 대관 승인한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대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합이 없고 대관자가 10인 이하면 대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3항 수시대관의 경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꿈나무극장, 오류아트홀에 대하여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수시 대관심의에 의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 제3항에 의거 생략할 수 있으며, 시설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대관 승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관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대관시간) ① 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대관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관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꿈나무극장, 오류아트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한다.

제7조(대관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1~5와 같다.

② 대관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 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재단은 대관자의 입장권 등 판매수익의 일부를 대관료로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내규로 정한다.

제9조(대관료 특례) ① 재단은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
2. 국가, 구로구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
3. 대관자가 대관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 관 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오류아트홀	대관일로부터 60일 전	대관일로부터 61 ~ 89일	대관일로부터 90일 이상 전
		미반환	50%	100%
대 관 료	구로꿈나무극장 신도림오페라하우스	대관일로부터 15일전	대관일로부터 15 ~ 29일	대관일로부터 30일 이상 전
		미반환	50%	100%
대 관 료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대관일로부터 1~2일전	대관일로부터 3 ~ 6일	대관일로부터 7일 이상전
		미반환	50%	100%

제10조(대관신청제한, 대관취소 제한 및 신청 자격정지) ①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저작권자의 허가·동의 없이 신청한 공연의 경우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재단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 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 등 대관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 제11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2조(대관자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대하여 재단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시행령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 필증을 재단 스텝회의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④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3조(장치의 설치 및 철거)** ①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에 따라 각종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4조(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배상책임) ① 재단은 대관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대관자가 책임 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④ 대관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동의 없이 공연(행사)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 사항 및 손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전 규정을 따른다.

제2조(관련규정폐지) 이 규정 시행내규 시행과 동시에 구로꿈나무극장 대관규정, 오류아트홀 대관규정,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대관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1.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대관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사 용 시 간	대 관 료				
총 579석(1층 380, 2층 199) ※ 휠체어석 6석 포함	구 주최 및 후원행사	공 연	단체행사	CF 및 방송촬영	비 고	
공연대관 (1회, 3시간)	평 일	400,000	500,000	900,000	1회, 5시간 기준 평일 1,200,000 주말 1,440,000	기준시간 초과시 30%가산 기타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주말 및 법정공휴일	480,000	600,000	1,080,000		
준비대관 (준비/리허설 /철수대관)	오 전 (09:00-12:00)	200,000	250,000	450,000		
	오 후 (13:00-18:00)	200,000	250,000	450,000		
	야 간 (19:00-22:00)	240,000	300,000	540,0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뉘며 평일준비대관료의 20% 가산됨.				

- 가. 대관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공연 및 특별한 형식은 별도로 정함
 나. 공연대관은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시까지임
 다. 공연대관의 기준시간 초과 시 30% 가산하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함
 라. 공연대관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신청해야 함
 마. 준비대관은 준비, 리허설, 철수대관을 포함하며 공연대관료의 50% 임
 바. 주말 및 법정공휴일의 공연대관료와 준비대관료는 평일대관료의 20% 가산함
 사. 공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철수시 별도의 대관료는 부과되지 않음
 아. 기본대관료 외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임
 자.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료에 적용됨
 차. 22시 이후의 대관은 주말 및 법정공휴일 공연대관료의 50% 할증
 카. 심야공연 및 철야 대관의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타. 공연시간은 작품성격 및 공연 총 소요시간에 따라 재단과 협의 후 조정해야 하며, 공연의 준비 및 철수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추가대관을 신청해야 함
 파.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무대, 객석 및 분장실 (기본 무대, 조명, 음향, 기계장치 등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 해당 분장실 사용 : 공연기간 및 2일 이내의 공연준비기간
 - 하우스매니저 1인과 공연장안내원 지원
 하. 대관자는 대관료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보완하여야 함

2.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종 류	사용료	기준	비 고
음향 장비	재생 playback	CD player 맥북	20,000 20,000	1회 1일
	녹음 Recording	2 Track (file, CD)	30,000	1회
	이동용 오디오 콘솔	100,000	1일	공연장 무대 외 로비, 전시장 등 기타장소
	이동용 앰프 및 스피커	150,000	1일	
	유선마이크	다이나믹	5,000	1일
		다이렉트 박스	5,000	1일
		컨덴서	10,000	1일
	무선마이크(1ch/1대)	20,000	1일	배터리 별도,
	모니터 기기	10,000	1일	모니터 스피커, 유선인어어 등
	영상 녹화(자체)	30,000	1회	-
조명 장비	유선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2,000	1일	기본설비 : 무대감독데스크, 각부속실
	무선 인터컴 1set	10,000	1일	-
	Follow Spot Light 2kw	20,000	1회	1대/1회 기준, 리허설 적용
	PAR 64	2,000	1일	1대/1일 기준
	Fog machine (ZR-33/UNIQUE HAZER/ANTARI HAZER)	20,000	1일	1대/1일 기준/ 재료비 별도
	S-4	2,000	1일	기본설치 50대 외 사용 시
	Strobo	10,000	1일	1대/1일 기준
	Bank light	3,000	1일	1대/1일 기준
	LED Moving SPOT Light (Halcyon Gold)	40,000	1일	1대/1일 기준, 오퍼레이터 없음
	LED Moving WASH Light (MAC Aura PXL)	30,000	1일	1대/1일 기준, 오퍼레이터 없음
무대 장비	LED Moving WASH Light (MAC 301)	20,000	1일	1대/1일 기준, 오퍼레이터 없음
	LED CYC Light (Ovation CYC 1FC)	15,000	1일	1대/1일 기준, 오퍼레이터 없음
	무용 고무매트(외산)	100,000	1일	테이프 별도
	무용 고무매트(국산)	80,000	1일	
	포매스	50,000	1일	
	흑샤	20,000	1일	
	백샤	20,000	1일	
무대 기계	연주단 및 합창단	30,000	1일	조율비 별도
	피아노(Steinway)	60,000	1일	
	오케스트라 피트	30,000	1일	
기 타	음향반사판	40,000	1일	
	로비사용	50,000	1일	매료소 및 전기 사용료 등
	냉난방비	80,000	1회	3시간 기준
	환경정리부담금	60,000	1일	화환 및 폐기물
	빔프로젝터	150,000	1일	
	자막 프로젝터	60,000	1일	자막 프로젝터 2대

[별표 2]

1. 구로꿈나무극장 대관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시설명	대관목적	기본대관료(시간당)		비 고
		일반 대관 (평일)	일반 대관 (주말·공휴일)	
구로꿈나무 극장	준비 및 리허설대관, 철수대관, 영화상영	20,000	24,000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공연 및 행사대관, 촬영대관 (시연회, 공개리허설 포함)	40,000	48,000	

(※ 관내 소재 비영리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봉사단체 등을 지칭함)

가. 대관가능시간은 9~22시까지이며, 1일 3시간 기준으로 그 이상은 1시간 단위에 따라
부과함. (단, 22시 이후 대관의 경우는 대관료의 50% 할증함.)

나. 공연대관 외 준비대관 1시간 필수 포함

다. 기준시간 초과 시 30% 가산하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

라. 주말 및 법정공휴일의 공연대관료와 준비대관료는 기본대관료의 20% 가산함<삭제>

마. 구로구 공공행사, 관내 비영리 단체는 기본 대관료의 50% 감면

바.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무대, 객석 및 분장실
- 조명(기본 프리셋 상태의 조명), 음향(유선마이크 3개) 등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2. 구로꿈나무극장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종 류	사용료	기준	비 고
음향 장비	모니터 스피커	10,000	1일	1조
	마이크설치	5,000	1일	Suspension Mic System 외 1대 기준
	다이나믹 무선마이크(1ch/1대)	5,000	1일	
조명 장비	빔프로젝트	10,000	1일	
기타	냉난방비	30,000	1회	3시간 기준
	환경정리부담금	10,000	1일	
	추가 전기사용료	10,000	1일	
	티켓발권	100	1장	1장/1회 기준

[별표 3]

1. 오류아트홀 대관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기 준	대관일	대관료	
			공연	방송 · 촬영
오류아트홀 (휠체어 3석 포함) (총 365석)	1회 3시간	평일	240,000	600,0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평일 기본 대관료의 20% 가산됨	
비 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문화행사 기본대관료 30% 감면			

- 가. 준비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
- 나. 대관가능 시간은 9~22시까지이며 12~13시는 대관 가능시간에서 제외함
- 다. 공연 대관시 준비대관 1회 필수
- 라. 공연대관은 1회 3시간 기준이며 기준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마. 기준시간 초과 시 30% 가산하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
- 바. 준비대관에는 준비, 리허설, 철수 포함
- 사. 준비대관료의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평일 준비대관료의 20% 가산됨
- 아. 22시 이후 대관의 경우는 대관료의 50% 할증
- 자.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무대, 객석, 분장실
- ※ 기본조명, 기본음향, 부대설비 대관료는 별도임
- 차. 빔 프로젝트 대여 시, 노트북 지참

2. 오류아트홀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사용료	기준	비 고
빔프로젝트	50,000	1시간	※ 12,000안시
냉난방	20,000	1시간	
Fog Machine (HAZER BASE)	20,000	1대/1일	포그액 별도
기타	기본음향	30,000	1회 콘솔, 앰프,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3개
	무선마이크(1ch/1대)	10,000	1일 1대 기준
	유선 인터컴 1set (기본설비 외)	2,000	1일 기본설비(무대감독데스크, 조정실)
	무선 인터컴 1set	10,000	5일 초과 시부터 5,000원
	기본조명(화이트)	30,000	1회
조명 장비	Moving Spot Light	20,000	1일 1대 기준
	LED Wash Light	10,000	1일 1대 기준
악기	전자피아노	30,000	1일

[별표 4]

1.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시설명	기본 대관료	비 고
야외극장	20,000 / 1시간	① 기본 대관 시간은 2시간 산정 ② 평일 야간(18~22시) 및 주말은 기본 대관료의 20% 를 가산 ③ 대관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지하 소극장	10,000 / 1시간	

가.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무대, 객석
- 공간사용, 기본음향, 기본조명, 키보드피아노, 보면대, 의자
- 빔 프로젝터 대여 시, 노트북 지참

2.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종 류	대관료	기 준	비 고
음향장비	무선마이크 1개	5,000	1일	
조명장비	LED Wash Light	10,000	1일	지하 소극장에 한함
	LED Moving Light	20,000	1일	
영상장비	빔 프로젝터	10,000	1일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5,000	1회	지하 소극장에 한함 11~3월 난방, 6~9월 냉방 의무

[별표 5]

1.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대관료

(단위: 원, VAT별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1일(09:00~18:00)	20,000 / 1시간	기타 부대설비료 별도 6월~9월/11월~3월 냉난방 의무사용
주말 및 야간(18시 이후)	24,000 / 1시간	

- 가. 기본 대관시간은 2시간으로 함(준비대관은 1시간당 50% 별도)
- 나. 기준 대관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30% 가산됨
- 다. 대관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라. 반입장비 및 물품내역 사전 협의
- 마. 소강당 기자재사용 훼손 시 단체(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함
- 바. 대관자는 대관예정일로부터 7일(주말 포함)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단,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일에 상관없이 긴급 대관을 실시할 수 있다.)
- 사. 준비 대관은 공연, 행사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분	종류	사용료	기준	비고
소강당	빔프로젝트	50,000	2시간	
	노트북	10,000	2시간	
	피아노(Boston)	30,000	1일	조율비 별도
	무선마이크	5,000	1일	1개/1일 기준
	냉·난방	3,000	1시간	11~3월/6~9월 냉난방 의무사용

[별표 6]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구로꿈나무극장 · 오류아트홀 세부 운영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관련)

1. 대관의 종류

- 가. 공연장 대관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준비/리허설/철수대관), 촬영대관, 행사 대관으로 구분한다.
- 나. 정기대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재단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 다. 수시대관: 당해연도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 별도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2. 대관료

- 가. 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 기본대관료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공연시작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대관승인통지일로부터 대관일까지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기본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나.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재단은 대관자의 입장권 등 판매수익의 일부를 대관료로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공연장에서는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대관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시설사용 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라. 공연이외의 녹음, 촬영, 행사 등의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마.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관료 잔금 납입 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관 중 발생하는 부대설비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납부해야 한다.
- 바. 재단과 공동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 사. 재단이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아.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준비대관 전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자. 재단은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 차. 대관자는 공연장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반드시 재단이 지정하는 은

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장권

- 가.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재단의 운영방식에 따른다.
- 나.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 대관자는 기본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라. 모든 입장권은 티켓판매 개시일 30일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입장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배치도(좌석구분) 및 입장권 발행계획서, 입금확인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전산 입장권의 경우 검인 과정을 생략 한다.
- 마.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1) 입장권의 앞면 : 공연제목, 공연일시, 공연장소, 좌석번호,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함)
 - 2) 입장권의 뒷면 : 공연 안내 및 공지사항(시설에 따라 별도 안내)
 - 3) 티켓 절취선 작업
- 바. 대관자는 입장권 매수를 객석수를 초과하여 임의로 발행할 수 없으며 재단은 승인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사. 재단은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시설별 운영 사항에 따른다.
- 아. 대관자는 교환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시에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 대관자의 의무

- 가.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연의 녹화 또는 방송을 할 때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기술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하여 관객의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이 유보할 수 있다.
- 다.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 라.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 마.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2주전까지 재단의 대관 주관부서가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태프회의 참석 시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바. 대관자 측 공연관련 스태프 및 출연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폐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5. 배상책임

- 가. 대관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동의 없이 공연(행사)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 사항 및 손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나. 분장실 도난 사고 및 물품보관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 다. 대관 당일부터 공연칠수 마감까지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고,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재단 소속의 감독에게 있다.
- 라. 대관자는 재단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